

제207차 이사회 승인

2000. 8. 31

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학교법인 정의학원

일반직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일반직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의 청구·심사 및 결정 등 재심절차에 관하여 본 법인 정관 제88조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재심위원회 구성) ①재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재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인이사
2. 대학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제 3 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조 (재심의 청구등) ①일반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처분권자를 말하되, 이사장이 처분권자인 경우에는 처분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서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재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항의 기간 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 후에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그 사본 1부와 처분사유설명서(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인사 발령통지서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학교명과 직위
3. 피청구인
4.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5.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
6. 재심청구의 취지
7. 재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④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재심청구서는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심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은 변명서 및 그 부분 1부와 징계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①재심을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 이라 한다)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는 사유의 여부는 재심위원회가 결정한다.

제 6 조 (대리인의 지정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의 피청구인은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재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직원 또는 변호사가 피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재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피청구인의 변명서 송달) 재심위원회는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변명서 부분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8 조 (보정명령등)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서(이하 “청구서” 라 한다)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명하여야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청구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보정명령은 설치학교의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소식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보정명령은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재심위원회가 해당 부서에 대하여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부서장은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명한 재심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 한다.

제 9 조 (처분의 취소) ①피청구인은 재심위원회에 계속중인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 때에는 재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에 그 사건의 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재심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심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 11 조 (기일지정통지)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는 자가 설치학교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당사자중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설치학교의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소식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통지는 당해 당사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재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사건의 심사·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검증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당사자는 재심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재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13 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①재심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와 징계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감정 기타 사실조사 또는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재심위원회가 재심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기관의 소속직원을 증인으로 소환할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재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재심위원회는 증인을 환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심사의 범위) 재심위원회는 징계 기타 재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못한다.

제 15 조 (청구인 등의 진술) ①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재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로 심문할 수 있다.

③제11조 제1항의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청구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기일 또는 재심위원회가 특히 서면에 의한 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안에 서면에 의한 진술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증거제출) ①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는 그 신청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③재심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설치학교의 교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조서작성)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의 심사절차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①재심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재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재심청구가 부적법한 것인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 한다.
2.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재심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③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징계처분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흠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끝내도록 하여야 하며, 재심위원회의 취소 또는 변경명령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 기타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재심위원회는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⑤재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제 19 조 (결정서의 작성) 재심위원회는 재심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의 개요
4. 증거의 판단

제 20 조 (결정서의 송부) ①결정서(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한 경우의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는 그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과 처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부함에 있어서 그 결정서가 재심위원회의 과실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소·성명과 결정주문을 설치학교의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소식에 게재하고, 그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는 날에 그 결정서는 당해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 21 조 (재심결정의 효력)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제 22 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①재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약간 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법인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 23 조 (수당) 재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기록보관) 재심기구 및 징계기구의 모든 기록은 법인사무국에 보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승인한날부터 시행한다.